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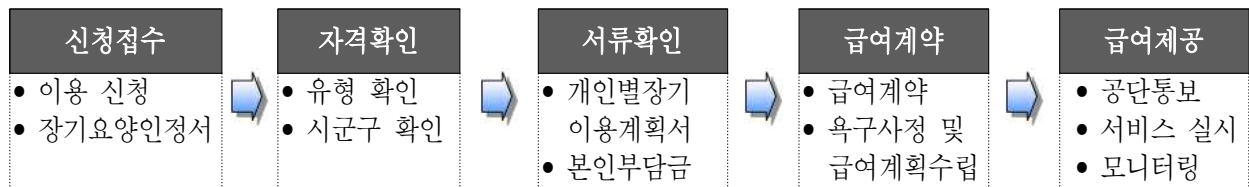
강북나눔돌봄센터 살핌 방문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의 게시

(이용 대상자 및 정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며, 이용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절차)

이용 대상자 또는 가족, 지역사회 유관센터가 이용 신청하면 센터는 아래의 이용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비서류) 이용 대상자 또는 가족, 지역사회 유관센터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이용기간)
- ②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월 한도액, 급여의 종류 및 계획, 서비스내용)

(계약의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센터와 이용자가 제공(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직접전달,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7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센터 장기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① 서비스 제공센터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③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계획과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④ 이용자의 상태나 욕구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④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 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이용료)

- ①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④ 매년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3.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용료 납부)

-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5일 내에 정산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

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이용자(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 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의 납부방법 변경 요청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⑤ 센터는 이용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발급한다.

(서비스 계획)

- ① 센터는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이용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

- ①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급여 외 행위의 금지)

- ①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 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이용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2.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3.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제공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5. 이용자가 질병 감염 또는 식중독 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보험의 가입) 센터는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